

2019년도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11. 22.(금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 : 김경숙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재화 위원, 박정인 위원, 최현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2건(안건번호 제2019-154090호~154149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본 심의건은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국내외 영상물로서 가장 보통의 연애, 조커, 제미니 맨, 퍼펙트 맨 모두 10월 개봉한 영화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즉시 시정권고의 필요가 있음. 같은 저작권침해라고 하더라도 상영관의 수익과 부가관련 시장에 직접적 침해를 주고 이용자의 영상물소비습관에 큰 위해를 가하는 영화개봉후 만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저작권 침해는 적극적인 단속 뿐 아니라 향후 입법상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중죄로 다루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여짐.
- B 위원 : 본 심의 회의에 상정된 60건 72개 게시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다. 체증 자료를 통해 볼 때 위의 불법 복제물이 웹하드 등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다수에게 전송된 것이 확실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.
- C 위원 : 본 심의 안건 대상물들은 10월에 모두 개봉되어 인기리에 상영된 국내외 영상물들로서, 웹하드에 복제 전송되어 있음.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르면 보호원은 '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'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이는 저작권자 등의 위임이나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.

시정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에 의해 복제 전송되어 있는 저작물이어야 함. 본 심의 안건 대상물들인 영상물들은

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에 의해 복제 전송된 것으로서 보이며,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임.

이에 본 심의안건 대상물들에 대한 복제 전송 또는 삭제의 시정권고는 타당함. 다만 이미 삭제조치 된 영상물들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- D 위원 : 상기 안건은 저작물의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.

다만 이미 전송중단 되거나 삭제조치된 경우,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임.

**2019년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**

2019. 11. 22.

분과위원장 김경숙

위원 박재화

위원 박정인

위원 최현용